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사보고서

2025. 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3일, 조경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 의원)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 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 2제2항 신설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협약에 가입한 국

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현행법은 외국 해기사를 우리나라의 선박직원으로 고용하기 위해 국제협약 가입, 당사국과의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 등 단계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선 선원들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 외국인 해기사 도입 관련 노·사·정(원양산업과)이 구체적 실행방안, 내국인 해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원양어업계에 외국인 해기사 도입 관련 노·사·정(원양산업과)이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노사합의, 절차에 따른 세부사항, 내국인 해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노·사·정 협상의 원만한 합의와 이해관계자와 협의 진행 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해기사가 될 수 있는 특례 규정 중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관련 규정을 통합조정하여 수정의결함.

##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9. 부대의견

없음

##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정이유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해기사가 될 수 있는 특례 규정 중 「어선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내용

- 가. 외국 해기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우리나라 해기사 자격 부여 특례 규정 중 「어선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제10조의2제1항).
- 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함(안 부칙).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를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로 하고, 안 제10조의2제2항 중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를 “제4조제1항에도”로 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는 한국선박의 선  
박직원이 될 수 있  
다.

## <신 설>

② 「어선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  
다고 인정하면 해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제 4 조 제 1 항 에 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③ (개정안과 같음)

당 <u>체약국</u> 의 해기	-- <u>체약국</u> 또는 당
사 면허증에 승무	<u>사국</u> -----
할 수 있는 것으로	-----
되어 있는 선박 및	-----
그 선박에서 수행	-----
할 수 있는 직무의	-----
범위에서 선박직원	-----
으로서 승무할 수	-----
있는 선박 및 그	-----
선박에서의 직무	-----
범위를 정하여 이	-----
를 인정(이하 “승무	-----
자격인정”이라 한	-----
다)하고, 승무자격	-----
증을 발급할 수 있	-----
다.	---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승무자격인정의	⑤ -----
유효기간은 5년으	-----
로 한다. 다만, 해	-----.
당 <u>체약국</u> 에서 해	- <u>체약국</u> 또는 당사
기사 자격을 잃은	국-----
때에는 그 때부터	-----
효력을 잃는다.	-----.
⑤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별 칙) -----	제27조(별 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9조(제10조의2 <u>제5항</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4. ----- <u>제6항</u> -----	4. (개정안과 같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5. ~ 8. (개정안과 같음)
제28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별 칙) -----	제28조(별 칙)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를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체약국”을 “체약국 또는 당사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체약국”를 “체약국 또는 당사국”로 한다.

②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혜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제27조제4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p>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p>	<p>-----.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9조(제10조의2<u>제5항</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p>	<p>4. ----- <u>제6항</u>----- ----- ----- ----- ----- ----- ----- ----</p>
<p>5. ~ 8. (생 략)</p>	<p>5. ~ 8. (현행과 같음)</p>
<p>제28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p>	<p>제28조(별칙) ----- -----. -----.</p>
<p>1. 제9조(제10조의2<u>제5항</u>)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p>	<p>1. ----- <u>제6항</u>----- ----- ----- ----- ----- ----- ----- -----</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